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설치 규모 확대 등 (안 제3조, 제6조 등)	4
2.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장의2 신설)	11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7. 25.
- (3) 회 부 일 : 2024. 7. 26.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및 제6조제3항).

나.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5항제5호 및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5항제3호

의2 및 제3호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설치 규모 확대(안 제3조, 제6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며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 ----- -----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

<신 설>

4.(생 략)

<신 설>

5. (생 략)

⑥ ~ ⑧ (생 략)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충에 관한 사항

3의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
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기본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으
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u>공공전문진료센터</u> 및 <u>책임의료기관</u>에 대하여 <u>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u>공공전문진료센터</u> 또는 <u>책임의료기관</u>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u>공공전문진료센터</u> 또는 <u>책임의료기관</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u>다</u>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국가재정법</u>」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평가) ① ----- <u>공공보건의료기관</u>,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 평가하여야 한다. ② ----- ----- <u>공공보건의료기관</u>,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 ----- -----. ③ ----- <u>공공보건의료기관</u>, <u>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u>, --- ----- ----- -----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¹⁾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지원과 비용 보조를 모두 의무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확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제2항제4호²⁾에 따른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생략)

2)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 개정안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보조 의무화 규정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필수요료를 보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난 등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보조를 통하여 지역 의료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은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일차적으로 그 관련 비용을 부담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그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개정안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와 병상의 비중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내용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현재 대비 2~3배 이상 증설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의료수요나 전체적인 병상 수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 · 도 별 공공의료기관 비중(2023) >

구분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전체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비중
단위	개소	개소	%	병상	병상	%
전국	4,227	220	5.2%	651,654	61,650	9.5%
서울	553	23	4.2%	79,708	8,609	10.8%
부산	408	9	2.2%	65,853	3,578	5.4%
대구	228	9	3.9%	37,494	3,747	10.0%
인천	217	8	3.7%	31,870	1,373	4.3%
광주	276	8	2.9%	37,083	2,589	7.0%
대전	134	8	6.0%	20,332	3,016	14.8%
울산	98	1	1.0%	14,675	149	1.0%
세종	15	1	6.7%	1,724	408	23.7%
경기	891	30	3.4%	126,949	8,847	7.0%
강원	101	18	17.8%	14,809	3,172	21.4%
충북	113	11	9.7%	18,569	2,854	15.4%
충남	168	10	6.0%	25,487	3,164	12.4%
전북	201	12	6.0%	34,815	3,273	9.4%
전남	223	22	9.9%	38,217	4,724	12.4%
경북	225	24	10.7%	40,138	4,578	11.4%
경남	347	21	6.1%	59,083	6,101	10.3%
제주	29	5	17.2%	4,848	1,468	30.3%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

려는 것이나,

-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최근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³⁾도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은 그 입법이 향후 다른 분야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은 국가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 지역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의 설치·운영 또한 지역의료 수요, 재정 여건,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보다는 국가 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의 형해화 초래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없이 지원책만 마련될 시 부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난립을 양산하여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족한 지역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

2.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장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시 기금의 운용방안을 포함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를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③ ~ ⑥ (생략)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운용방안</u>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u>

<신 설>

4.(생 략)

<신 설>

5. (생 략)

⑥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충에 관한 사항

3의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현행과 같음)

5.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공공보건의료기금

제19조의2(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
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
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입금

제1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

<신 설>	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2.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충원 3.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제공 4.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5.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	--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별개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데,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4)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정부의 출연금·용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2024년도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 5,807억 6,300만원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287억 5,000만원임.

< 공공보건의료확충 프로그램 사업 >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코드	단위사업	예산액(계획액)
계			580,763
일반회계	소계		177,230
	273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21,255
	2733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299
	2734	공공보건의료정보화	6,408
	2740	공공보건의료지원	28,750
	2750	의료취약지 지원	4,266
	2755	생명윤리및안전정책	12,760
	2756	국가암관리사업지원	1,352
	2757	국립암센터운영	89,403
	2758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12,73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소계		211,109
	2743	지방의료원 등 육성	193,955
	2750	의료취약지 지원	17,15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소계		46,734
	273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46,734
국민건강증진기금	소계		145,690
	2701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59,447
	2731	장기기증활성화지원	5,087
	2734	혈액안전관리	8,796
	2735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2,876
	2759	국가암관리사업지원	69,484

* 내부거래(계정간거래), 보전거래(여유자금운용) 제외

- 개정안에 따른 기금 재원의 핵심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약 1조 9천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므로,⁵⁾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시 매년 1조원 가량의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 금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20,991	1,971,903	1,940,976	1,966,350	1,900,809

* 출처: 국세통계포털

- 코로나19과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대응에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바, 평시에 이를 위한 재원을 기금으로 확보해두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적인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이 연 2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신고·부과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을 일반회계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입되는 총예산 규모와 효율적인 집행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담배와 함께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주세의 일정 부분 편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5) 국세청 통계포털의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중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최근 5년간 주세 신고 금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655,320	2,516,442	2,462,943	2,793,845	2,823,323

* 출처: 국세통계포털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재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가 논의 중인 바(참고자료), 이와 연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사업 구분안 (2024년 8월 기준)
-------------	---

□ 필수의료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코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계				605,343
일반회계	소계			300,087
	4331	의료인력 양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7,776
	2755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359
	2740	공공보건 의료지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6,100
	3345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5,215
	1542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750
	1535	장애인선택적 복지	발달장애인 지원	5,757
	4337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270
	3033	보건산업정책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8,39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	41,25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49,50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	60,475
	2757	국립암센터운영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 본부운영(R&D)	47,605
	1542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4,600
	3345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11,133
	3345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54)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 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	3,00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6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19,097
	3040	보건의료연구개발	(64) 한국형수술질향상프로젝트(R&D)	6,11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60)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기반 CDSS 개발(R&D)	9,100
	3031	보건의료연구개발	(57) 응급실 특화 AI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R&D)	3,600

회계/기금	코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책특회계	소계			2,917
	3763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운영 및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 사업(R&D)	2,917
국민건강 증진기금	소계			32,157
	2756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국가암관리	10,650
	3346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11,363
	1563	장애인의료재활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2,460
	1563	장애인의료재활지원	재활병원건립/ 권역재활병원 지원	7,684
응급의료 기금	소계			270,182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 응체계 지원	10,048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지원	10,811
	283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응급환자미수급대지급	7,310
	283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응급처치활성화지원	4,339
	2831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국가재난의료체계운영	7,144
	283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전문화교육	3,155
	283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25,712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54,632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24,021
	2833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57,724
	2834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	23,878
	2834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응급의료조사연구	196
	2836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응급의료정보망구축(정보화)	2,164
	5176	응급의료기금운영비	인건비	227
	5176	응급의료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115
	2835	119구급 운영지원	119구급대지원	21,848
	2835	119구급 운영지원	119구조장비확충	11,201
	2832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지원	1,750
	2837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 영관리	3,907

* 주: 해당 사업 구분은 현재 부처간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래 특별회계 및 기금별 세부
사업 목록은 예시로 활용 필요

**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의료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회계/기금	코드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계획액)
계				150,146
일반회계	소계			80,378
	2740	공공보건의료지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72,671
	3344	구강건강서비스 기반 조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6,669
	2750	의료취약지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1,03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69,768
	2743	지방의료원 등 육성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52,614
	2750	의료취약지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17,154

* 주: 해당 사업 구분은 현재 부처간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래 특별회계 및 기금별 세부 사업 목록은 예시로 활용 필요

** 자료: 보건복지부